

강원도립대학교 NCS지원센터 운영규정

(제정) 2015-03-13 규정 제364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(개정) 2016-10-28 규정 제425호

(개정) 2019-05-30 규정 제520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업무) 센터는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·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10.28.>

1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·개편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>
2.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과정 개발·개편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5.30.>
3. NCS 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, 2019.5.30.>
4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자체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, 2019.5.30.>
5. NCS 학습모듈 연계 교수학습지침서 개발 계획 수립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0.28.> <개정 2019.5.30.>
6. NCS 관련 교원 연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0.28.> <개정 2019.5.30.>
7.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0.28.> <개정 2019.5.30.>
8. NCS 및 NQF(국가자격체계) 확산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0.28.> <개정 2019.5.30.>
9. 기타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, 2019.5.30.>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6.10.28.>

②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NCS연구팀, 교육과정개발운영팀, 평가환류(CQI)팀 등을 둘 수 있다. 각 팀의 팀장 및 팀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0.28.>

③ 센터는 학과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“NCS전담교수협의회”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<신설 2016.10.28.>

④ 센터에는 교직원들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진행한다. <신설 2016.10.28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NCS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10.28.>

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10.28.>

④ 삭제 <2016.10.28.>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<개정 2016.10.28.>

2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·개편 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>

3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·평가 및 교육품질관리·환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>

4. 직무능력성취도의 평가 계획,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0.28.>

5. NCS 기반 교육 연수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0.28.>

6.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0.28.>

7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칙(2015. 3.13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10.28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5.30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